

■ 최신 법령 ■

[보험]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

배성진 변호사 | 허종 변호사

2014년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그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의 보험상품 판매비중 제한 및 보험회사의 벤처투자조합 등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의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개정안이 2014년 7월 30일 자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.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규제·법제 심사와 차관·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주요 내용**가. 보험회사의 벤처투자조합 등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완화(안 제50조제1항)**

- (1)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¹ 이내에서 자산을 운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습니다. 다만 보험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분을 100% 소유한 완전자회사, 해외 금융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습니다.
- (2) 이번 개정안에서는 향후 보험사의 창업·벤처 투자 등 대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의 예외가 되는 자회사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.

¹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총자산의 2% 및 자기자본의 40% 이내, 자회사 발행 주식·채권은 총자산의 3% 및 자기자본의 60% 이내에서만 허용(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5호, 제6호).

나. 전업계 신용카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판매 비율 규제 적용 유예(안 부칙 제2조)

- (1) 현행 보험업법령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의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이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의 25%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습니다(시행령 제40조 제6항). 그러나 생명보험사의 경우 중·소형사 2~3개사만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업계 현실상 위와 같은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.
- (2) 이러한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상황,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2016년 말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. 다만 유예기간 종료 후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2017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

2. 다운로드 : 「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」, 「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」